


韓國產業規格 (Korean Industrial Standards)

 KS A 14010	환경 심사지침-일반원리 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uditing- General principles	제정 : 1997. 6. 3 국립기술품질원고시 제 97 — 108 호
---	---	--

1. 서문

이 규격은 1996년 제1판으로 발행된 ISO 14010(Guidelines for environmental auditing-General principles)을 번역해서 기술적 내용 및 규격서의 서식을 변경하지 않고 작성한 한국산업규격이다.
 이 규격의 **부속서 A**는 단지 참조를 위해서만 사용한다.

2. 개요

환경 심사는 환경 성과를 검증하고 이의 개선을 꾀하기 위해 유용한 수단으로 규정한다.
 이 규격은 조직, 심사원 및 심사 의뢰인에게 환경 심사 실행시 적용할 수 있는 공통적인 일반 원리에 대한 지침을 제공하기 위한 것으로, 환경 심사와 그 관련 용어에 대한 정의 및 환경 심사에 관한 일반 원리를 제공한다.
 이 규격은 **KS A 14011** 및 **KS A 14012**를 포함하는 환경 심사 분야에 대한 한국산업규격 시리즈 중의 하나로, 관련된 추가 규격이 앞으로 제정될 수 있다.

1. **적용 범위** 이 규격은 모든 종류의 환경 심사에 적용 가능한 일반 원리를 제공하며, 이 규격에 의거 환경 심사로 규정되는 활동은 이 규격에 명시된 권고 사항을 만족하여야 한다.
2. **인용 규격** 다음에 나타내는 규격은 이 규격에 인용됨으로써 이 규격의 규정 일부를 구성한다. 이러한 인용 규격은 그 최신판을 적용한다.

KS A 14011 : 1997 환경 심사 지침-심사 절차-환경 경영 체제 심사

KS A 14012 : 1997 환경 심사 지침-환경 심사원 자격 기준

3. **정의** 이 규격에서 사용하는 주된 용어의 정의는 다음에 따른다.

비고 환경 경영 분야에서의 용어의 정의는 **KS A 14050** 등을 참조한다.

3.1 **심사 결론** 심사원이 심사 발견 사항에 적용했던 사유를 근거로, 심사 주제에 대해서 심사원이 밝힌 전문적인 판단 또는 의견

3.2 **심사 기준** 심사원이 심사 주제와 관련하여 수집한 심사 증거를 비교하는 데 기준이 되는 방침, 관행, 절차 또는 요건

비고 요건에는 규격, 지침, 특정 조직의 요건, 법률 또는 규제 요건을 포함할 수 있으나 반드시 이에 국한되는 것은 아니다.

3.3 **심사 증거** 사실을 검증할 수 있는 정보, 기록 또는 진술서

비고 1. 심사 증거는 질적 또는 양적 증거일 수 있으며, 심사원이 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판정하는 데 활용한다.

2. 심사 증거는 전형적으로 심사 범위 내에서 인터뷰, 문서 검사, 활동과 조건의 관찰, 기존의 측정 및 시험 결과 또는 그 밖의 방법에 근거한 것이다.

3.4 **심사 지적 사항** 합의된 심사 기준과 비교하여 수집된 심사 증거를 평가한 결과

비고 심사 지적 사항은 심사 보고서의 작성 근거가 된다.

3.5 **심사반** 주어진 심사를 수행하도록 지정된 심사원 그룹 또는 단독 심사원, 심사반에는 기술 전문가와 심사원 훈련 연수생도 포함될 수 있다.

비고 심사원을 구성하는 심사원 중 1인이 선임 심사원의 역할을 수행한다.

3.6 피심사자 심사의 대상이 되는 조직

3.7 환경 심사원 환경 심사를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비고 환경 심사원 자격 기준은 **KS A 14012** 등을 참조한다.

3.8 심사 의뢰인 심사를 의뢰하는 조직

비고 심사 의뢰인은 피심사자 또는 규제 사항이나 계약 조건으로 심사를 위할 권한을 갖는 조직이 될 수 있다.

3.9 환경 심사 특정 환경 활동, 사건, 조건, 경영 체제 혹은 이것과 관련된 정보가 심사 기준에 적합한지를 결정하기 위해 객관적인 심사 증거를 획득, 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를 고객에게 전달하는 체계적이고 문서화된 검증 과정

3.10 선임 환경 심사원 환경 심사를 관리하고 수행할 자격이 있는 자

비고 선임 환경 심사원의 자격 기준은 **KS A 14012** 등을 참조한다.

3.11 조직 회사, 법인, 상사, 기업, 공공 사업 기관, 연구소 또는 그러한 집단의 일부분이나 결합체로 주식회사 여부, 공공 또는 개인 소유 여부를 불문하고 자체의 기능과 관리 체계가 있는 것

비고 **KS A 14001** : 1996에서 채택됨

3.12 심사 주제 특정 환경 활동, 사건, 조건, 경영 체제 및 또는 이들과 관련된 정보

3.13 기술 전문가 심사반에게 특정 지식과 전문적 의견을 제공하나 심사원으로 참가하지 않는 자

4. 환경 심사에 관한 요건 환경 심사는 명확히 규정되고 문서화된 심사 주제에 초점을 맞춰야 한다.

또한 이러한 심사 주제를 책임지고 있는 당사자(들)도 명확하게 규정되고 문서화 되어야 한다.

심사 의뢰인과 협의한 후 선임 심사원의 의견이 다음과 같을 경우에만 심사를 실시해야 한다.

- a) 심사 주제에 대한 충분하고 적절한 정보가 수집되었음
- b) 심사 과정을 지원할 수 있는 충분한 자원이 확보되어 있음
- c) 피심사자의 충분한 협조가 있음

5. 일반 원칙

5.1 심사 목표 및 범위 심사는 심사 의뢰인이 정한 목적에 근거한 것이어야 한다. 심사 범위는 심사 의뢰인이 정한 목적을 만족시키기 위해 심사 의뢰인과 협의하여 선임 심사원이 결정한다. 심사 범위는 심사 활동의 범위와 한계를 기술한다.

심사 목표 및 범위는 그 내용이 심사 이전에 피심사자에게 전달되어야 한다.

5.2 개관성, 독립성 및 자격 심사반 멤버는 심사 과정, 심사 지적 사항 및 심사 결론의 객관성을 보장하기 위하여, 수행할 심사 활동과 독립적인 관계에 있어야 한다. 심사 과정에서 객관성을 유지하여야 하며 편견 및 이해 관계가 없어야 한다.

외부 또는 내부 심사반원 활용 여부는 심사 의뢰인의 선택 사항이다. 조직 내의 직원 중에서 심사반원을 선정하는 경우에는 심사 주제를 직접 책임지고 있는 자를 선정해서는 안 된다.

심사반원은 심사 책임 사항을 수행하기 위해 적절한 지식, 기술 및 경험을 갖추어야 할 것이다.

5.3 준수 사항 심사원은 환경 심사를 수행할 때 유사한 상황에서 심사원에게 기대되는 주의력, 근면성, 기술 및 판단을 활용하여야 한다.

심사반원과 심사 의뢰인과의 관계는 신뢰 및 신중함이 보장되는 관계이어야 한다. 심사반원은 법률에 의거 요구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심사 과정에서 알게 된 정보와 문서 및 최종 심사 보고서를 심사 의뢰인의 승인과 피심사자의 승인 없이 제3자에게 누설해서는 안된다. 심사원은 품질 보증 절차를 준수해야 한다.

5.4 체계적 절차 환경 심사는 이러한 일반 원칙과 적절한 형태의 환경 심사를 위해 개발된 지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비고 환경 경영 체제 심사 실시를 위한 지침은 **KS A 14011**을 참조한다.

환경 심사는 일관성과 신뢰성을 보장하기 위해, 문서화되고 적절히 규정된 심사 방법 및 체계적인 절차에 따라

수행되어야 한다. 환경 심사의 유형과는 상관없이 심사 방법과 절차는 일관성이 있어야 한다. 주어진 환경 심사의 특성에 비추어 필수적인 경우에만 환경 심사 절차를 달리할 수 있다.

5.5 심사 기준, 증거 및 지적 사항 환경 심사의 초기에 이루어져야 할 필수적인 단계는 심사 기준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러한 심사 기준의 세부 사항 상술 정도는 선임 심사원과 심사 의뢰인이 합의해야 하며, 이 피심사자에게 전달해야 한다.

심사 기준의 충족 여부를 조사하고 평가할 때 심사 증거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적절한 정보를 수집, 분석, 해석 및 기록해야 한다.

심사 증거는 독립적으로 심사를 실시하는 자격을 갖춘 심사원이 동일한 심사 기준을 근거로 동일한 심사 증거를 평가하여, 유사한 심사 지적 사항에 도달하게 하는 질 또는 양의 것이어야 한다.

5.6 심사 지적 사항 및 결론의 신뢰성 환경 심사 과정은 심사 의뢰인과 심사원에게 요구되는 수준의 신뢰성을 가진 심사 지적 사항 및 심사 결론을 제공하도록 계획(Design)되어야 한다.

부분적으로는 환경 심사가 한정된 시간과 자원을 가지고 실시되기 때문에, 환경 심사 과정에서 수집되는 심사 증거는 불가피하게도 활용 가능한 정보의 표면일 수밖에 없다. 따라서, 모든 환경 심사에는 불확도 요소가 내재되어 있으며, 환경 심사 결과 사용자는 이러한 불확도를 인식해야 한다.

환경 심사원은 심사 과정 중에 수집된 심사 증거의 한계성을 고려해야 하며, 심사 지적 사항과 심사 결론의 불확도를 인정하고 심사를 계획, 수행함에 있어서 이러한 요소를 고려해야 한다.

환경 심사원은 중요한 각각의 심사 지적 사항과 덜 중요한 심사 지적 사항 모두가 심사 결론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고려하여, 충분한 심사 증거를 얻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한다.

5.7 보고 심사 지적 및 또는 이에 대한 요약은 보고서 형태로 심사 의뢰인에게 전달해야 한다. 심사 의뢰인이 특별히 반대하지 않는 한 피심사자는 심사 보고서 사본을 제공받아야 한다.

심사 보고서에는 심사와 관련된 다음과 같은 정보를 수록하되, 반드시 이에 국한된 것은 아니다.

- a) 심사의 대상이 되는 조직과 고객에 관한 정보
- b) 합의된 심사 목적과 심사 범위
- c) 합의된 심사 기준
- d) 심사 수행 기간과 실시 날짜
- e) 심사반원에 관한 정보
- f) 심사에 참여한 피심사자 대표에 관한 정보
- g) 심사 보고서 내용의 기밀 여부
- h) 심사 보고서 배포처 목록
- i) 심사 수행 활동에 있어서 장애 요인을 포함한 심사 과정의 요약 내용
- j) 심사 결론

선임 심사원은 심사 의뢰인과 협의하여 심사 보고서에 수록할 이러한 항목과 추가 항목을 결정해야 한다.

비고 통상, 심사 지적 사항에 대한 시정 조치 결정은 심사 의뢰인 또는 피심사자의 책임 사항이다. 그러나, 심사 의뢰인과 사전 협의한 경우에는 심사원이 시정 조치에 대해 권고 사항을 제공할 수 있다.

부속서 A(참고) 참고 문헌

- (1) KS A 14001 : 1996, 환경 경영 체제-사용지침
- (2) KS A 14011 : 1997, 환경 심사 지침-심사절차-환경 경영 체제 심사
- (3) KS A 14012 : 1997, 환경 심사 지침-환경 심사원 자격 기준
- (4) KS A 14050 : 환경 경영-용어와 정의^(*)

주^(*) 발행 예정인 규격임.